

제267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74
----------	------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 18.
- 나. 회부일자 : 2024. 1. 25.
- 다. 상정일자 : 2024. 1. 30.

2. 안건설명

가. 제안설명자 : 장길천 의원

나. 제정이유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마.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홍보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시행규칙 (안 제11조)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1. 24. ~ 2024. 1. 28.)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17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장길천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본 안건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구정정보 및 재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함
 - 안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는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내용들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실태조사 등)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추진사업)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
- ▶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 ▶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안 제8조(위탁 및 지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 ▶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홍보)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

- 안 제10조(표창)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시 및 12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 2023년도 기준 등록된 광진구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장애 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구분	12,166	7,008	5,158	4,302	2,544	1,758	7,864	4,464	3,400
지체	5,274	2,926	2,348	921	589	332	4,353	2,337	2,016
시각	1,299	786	513	229	119	110	1,070	667	403
청각	1,857	1,067	790	338	188	150	1,519	879	640
언어	91	62	29	44	27	17	47	35	12
지적	807	466	341	807	466	341	0	0	0
뇌병변	1,172	682	490	657	363	294	515	319	196
자폐성	214	182	32	214	182	32	0	0	0
정신	518	256	262	515	255	260	3	1	2
신장	606	348	258	462	271	191	144	77	67
심장	30	21	9	25	18	7	5	3	2
호흡기	56	48	8	53	45	8	3	3	0
간	66	44	22	4	3	1	62	41	21
안면	9	5	4	6	3	3	3	2	1
장루. 요루	118	85	33	13	7	6	105	78	27
뇌전증	49	30	19	14	8	6	35	22	13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